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59호)

제안설명



2020. 12. .

서울특별시 의원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2선거구)

-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본 조례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 수립의 사전 절차인 건축심의 신청을 위한 동의요건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요건보다 강화되어 있어 정비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을 위한 동의 요건을 갖춘 경우, 건축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건축심의 신청 요건을 조정하는 것으로 제7조제3항 단서 중 “시행자를 제외한다”를 “시행자와 토지등 소유자 방식으로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동의요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며, 동의방법은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동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여 주셔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